

시 민

문서번호	기전설비2과-656
결재일자	2013.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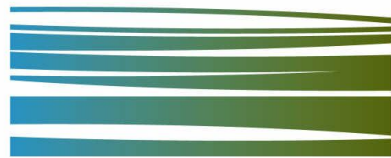
주무관	기전설비2과장	시설부장
이원준	김두석	02/18 김만수
협조	주무관	백민
	주무관	김진운



---

# 한강공원 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시행계획

---



HANGANGPARK 한강공원

2013. 2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전설비2과

# 2013 한강공원 분수시설 전기안전관리 계획

한강공원 분수시설 7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계약이 2013년 2월28일 만료됨에 따라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시행코자 함.

## □ 전기안전관리 대상시설

수배전반	시설용량	분수시설	관리방식
독섬 음악분수등	특고압 22.9KV 900KW	음악분수, 물보라극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규)
독섬 벽천분수	특고압 22.9KV 300KW	벽천분수	대행용역
여의도 물빛광장분수등	특고압 22.9KV 750KW	물빛광장분수, 수상분수	대행용역
난지 거울분수	특고압 22.9KV 350KW	거울분수	대행용역
난지 물놀이장분수	저압 380V 76KW	물놀이장분수	대행용역

※ 저압:직류750V이하 또는 교류600V이하/ 고압:직류750V초과 7KV이하 또는 교류600V초과 7KV이하/ 특고압-7KV초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제9항/제10항)

## □ 법적근거

- 법적의무 관리대상 : 저압 75KW이상 자가용전기설비, 고압이상 전기설비 등
  - ※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0조제1항
- 전기안전관리방법

구분	관리방법	근무형태	관련 법규정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무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세칙 제40조제3항
2	위탁관리(용역)	상시근무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전기사업법 시행세칙 제40조제3항
3	대행관리(용역)	-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전기사업법 시행세칙 제40조제3항

## □ 용역 계획

- 대상 : 독섬벽천분수 등 4개소 전기설비
- 기간 : 2013. 3. 1 ~ 2014. 2. 28 (1년)
- 소요예산 : 13,713,480원
  - ※ 한국전기안전공사 2013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구분	산출기초(부가세별도)	비고
저압 50~99KW	87,900(원/월)*12(월)*1개소 = 1,054,800원	난지물놀이장
고압 300~399KW	215,800(원/월)*12(월)*2개소 = 5,179,200원	독섬벽천분수, 난지거울분수
고압 700~799KW	519,400(원/월)*12(월)*1개소 = 6,232,800원	여의도물빛광장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5천만원이하 용역)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 개선사항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 절감액 : 9,873,600원 ( **소요예산 23,587천원 -> 13,713천원** )
  - ※ 독섬음악분수 1개소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 본부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직접 관리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절감

## □ 지원사항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지원( 전력기술인협회 가입비 및 의무교육비 등)
- 전기안전진단용 측정기 장비 등 물품구매(절연저항 측정, 전류측정 등)

첨부 : 1. 방침서(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개선) 1부  
2. 관련법령 3부  
3.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부 끝.

## 2013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단위:원/VAT별도)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저 압	49kW까지	76,900	○ 부가가치세 별도
	50 ~ 99kW까지	87,900	
	100kW이상	101,600	
고 압	99kW까지	106,400	1. 선납수용가 할인
	100 ~ 199kW까지	133,800	○ 3개월이상 : 2%
	200 ~ 299kW까지	148,800	○ 6개월이상 : 3%
	300 ~ 399kW까지	215,800	○ 12개월이상: 5%
	400 ~ 499kW까지	255,300	2. 장기계약수용가 할인
	500 ~ 599kW까지	340,900	○ 15~19년 : 3%
	600 ~ 699kW까지	430,000	○ 20~24년 : 4%
	700 ~ 799kW까지	519,400	○ 25년이상: 5%
	800 ~ 899kW까지	644,900	3. 다수계약수용가 할인
	900 ~ 999kW까지	748,000	○ 10~19건 : 3%
	1,000 ~ 1,249kW까지	979,000	○ 20~29건 : 4%
	1,250 ~ 1,499kW까지	1,173,700	○ 30건이상 : 5%
	1,500 ~ 1,999kW까지	1,607,100	4. 자동이체수용가1%할인
2,000 ~ 2,499kW까지	2,142,700		



## 전기사업법

[시행 2012.1.1] [법률 제10253호, 2010.4.12,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02-2110-5472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10.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10.5,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02-2110-5472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올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

## 업장

- 나.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갑종탄광
  -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②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③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우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문개정 2009.11.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0.8] [대통령령 제24130호, 2012.10.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02-2100-4127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

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삭제 <2011.9.15>
-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 [전문개정 2010.7.26]



		시 민			
문서번호	기전설비2과-620	주무관	기전설비2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재일자	2013.2.15.	이원준	김두석	김만수	02/15 한국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김종득
방침번호		치수과장 기전설비1과장			강호장



**-업무개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개선**



HANGANGPARK **한강공원**

**2013. 2**

**한 강 사 업 본 부**  
**[ 기전설비2과 ]**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무 ■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개선

한강사업본부가 소유 또는 점유중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며, 향후 서울시가 소유 또는 점유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확대 실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함.

## ■ 제안배경

- 저압 75KW이상 자가용설비·고압이상 설비는 법적의무 관리대상임  
(전기사업법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0조제1항)
- 전기안전관리 방식에는 전기안전관리자선임(직원), 위탁관리(용역), 대행관리(용역) 3가지 관리방식이 있음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 ■ 현황사항

- 설비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위 3가지 관리방식 중 하나를 관리할 수 있는 선택사항임.  
※ 설비용량 1000KW 이상의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사항임.
- 현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음.

## ■ 개선방안

- 전기안전관리업무 방식을 대행관리(용역)에서 전기안전관리자(직원) 선임으로 변경  
※ “독섬음악분수” 적용시: 823천원X12개월= **연간 9,876천원 예산절감** <전기안전공사 표준수수료>

## ■ 기대효과

- 서울시 전체 전기설비에 대하여 우리시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함으로써 보다 많은 예산절감 효과 발생
- 직접관리로 인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전기설비에 대한 책임관리 정착  
※ 다소 업무과중(과다) 우려됨.

## ■ 추진계획

- 2013년 독섬음악분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당초 “용역”에서 “직원”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으로 변경하여 실시 예정



## 전기사업법

[시행 2012.1.1] [법률 제10253호, 2010.4.12,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02-2110-5472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10.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10.5,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02-2110-5472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

업장

- 나.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갑종탄광
  -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②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③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우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 [전문개정 2009.11.20]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10.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10.5,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02-2110-547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 가. 발전소 상호간
  - 나. 변전소 상호간
  -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가. 발전소 상호간
  - 나. 변전소 상호간
  -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6.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7.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75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75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0]